거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9호

2026년 제7회(재공고) 및 제8회 거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8회 거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8일

거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무내용
청년다온 운영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주35시간)	민생경제과	- 청년정책·일자리 관련 상담 및 안내·홍보 - 청년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청년 및 청년단체 네트워크 운영·지원 - 청년 문화공간 시설 ·이용자 관리 등
거제로컬 누리센터 운영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1년 (주35시간)	농식품 유통과	- 거제로컬 누리센터(고현,아주점) 시설물관리 - 출하농가 및 농산물 기획생산 관리 - 식생활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 농식품바우처 업무추진 - 거제로컬누리센터 홍보 및 SNS 운영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무내용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지원	일반임기제 지방농업서기	1	1년	농식품 유통과	- 농산물잔류 농약분석 - 수산물 방사능 분석 - 잔류농약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거제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설물 및 물품관리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임기제 지방농업서기	3	1년	농식품 유통과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식재료 코드관리, 공급업체 위생관리, HACCP시설관리, 식재료 가격조사 및 결정, 식재료 품위 검수, 시설 위생관리, 배송업체 관리 등 -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관리운영(식재료, 위생관리) - 급식시스템 관리, 식재료 검수 정산 - 푸드플랜 교육홍보, 안전성 검사, 기획생산농가 육성, 미생물실 운영(식중독균 검사등), 기타농림사업(도시락공급, 과일간식등) 추진
어업지도선 기관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년	수산과	-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 어선 안전점검 - 낚시어선 안전점검 - 행정업무 지원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지역·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분야별 자격

임용분야 (직급)	임용 자격 기준
청년다온 운영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 ※ 근무시간 : 화~금 13:00~21:00, 토 10:00~18:00(일, 월, 공휴일 휴무) **【우대요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청년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업무의 1년 이상 근무경력 2.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거제로컬 누리센터 운영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한 자)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농산물 유통·판매, 로컬푸드 관련사업 시설운영·관리, 식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우대요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지원 (일반임기제 지방농업서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농식품 관련 화학 분석장비(LC-MS/MS,GC-MS/MS 등) 운용 분야(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임기제 지방농업서기)	**영양사 또는 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우대사항】 1년 이상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의 1년이상 근무경력

임용분야 (직급)	임용 자격 기준
어업지도선 선박기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현장 업무가 가능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선박기관 분야 근무 경력

다. 분야별 자격

❍ 일반임기제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시간선택제임기제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 예정 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 3배수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	선발예정인원 5배수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상'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3)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위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18.(수) ~ 11. 29.(일)	2026. 11. 30.(월) ~ 12. 2.(수)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6. 12. 9.(수) 예정	2026년 12. 14.(월) 예정	2026년 12월 중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원서접수 : 2026. 11. 30.(월) ~ 12. 2.(수) <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 ~ 18:00),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 수 처

1) 방문접수 : 거제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2) 우편접수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본관2층 행정과 인사팀(우편번호 53257)

라.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대리 가능)

- 거제시청 1층 납세과에서 응시수수료(거제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 이상(1만 원) / 6·7급(나・다급)(7천 원) / 8·9급(라・마급)(5천 원)

2)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번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00000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0급) 응시원서 재중'

5.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가. 보 수

1)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원)

구분	직급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급	62,096,000	44,296,000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000	26,110,000	

2)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나.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 부서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 시작시간 및 근무일 등이 상이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서식)

5)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6)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호 서식)

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특히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하는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로 직무분야 증빙이 안 될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4) 학위·연구논문 요약서,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공 통 사 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다. 유의사항

1)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제시 행정과 인사팀(☎ 055-639-3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소통참여 ▸시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